

인천광역시 조례 (공 포)

☐ 제 명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설치한 교육위원회를 동 법률 제10046호('10. 2. 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나. 제7대 의회부터는 교육의원제도의 일몰로 교육의원정수 5명이 감소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각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정수 조정과 소관 사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화('13. 1. 18.)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5185호, '13. 1. 4) 부칙으로 인천대학교 관계공무원 출석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의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개정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2조)

나. 의회에는 교육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6개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그 밖의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각각 7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산업위원회 명칭을 산업경제위원회로 변경함(제25조)

- 다. 금년 2월 24일자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와 통합(5월 2일자로 안전행정국 소속 대회총괄과로 개편)된 국제경기지원관실 사무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고, 4월 21일자로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 사무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함(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라. 산업위원회로 편중된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항만공항해양국 사무를 건설교통위원회로 이관함(제2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 마. 교육의원제도가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개선(改選) 또는 보임(補任)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함(제28조)
- 바.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관행적으로 수정안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31조)
- 사. 개정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조 명 우

2014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363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9호 중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한다.

제25조 제목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정수)”로 하고, 본문 각 호 중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
4.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
5. 건설교통위원회 7명 이내
6. 교육위원회 7명 이내

제26조 제목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 가.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나. 소방안전본부 및 관련 소방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인재개발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라. (재)인천발전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마. 인천국제교류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바. 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 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나.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인천도시공사 사무 중 관광사업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라. 인천시설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마. 인천의료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바. 인천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사. 인천의료관광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아. 인천여성가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자. 인천강화고려역사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차. (사)인천도서관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4. 산업경제위원회

- 가.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나.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바.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사.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아. (재)인천테크노파크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자.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차.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카. 인천종합에너지(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 타. 인천유시티(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5. 건설교통위원회

- 가.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종합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라. 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만, 관광사업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
- 마. 인천교통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 가.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28조 제목 “(상임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임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를 받

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